

	학교기업 운영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6. 1.
		최종개정일자	2015. 10. 22
		담당부서	학교기업사업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학교기업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학교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및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며, 대학과 학교기업 기능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5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기업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이스캠프
2. 도시디자인연구소<개정 2015.10.22>
3. <삭제 2015.10.22>

제3조(소재지)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로 한다.

제4조(주관부서) 학교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업무의 최종 주관부서는 학교기업 사업단에서 관할한다.<개정 2015.10.22>

제5조(조직 및 운영) ①총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되며, 학교기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학교기업단장(이하“사업단장”)을 임명한다.<개정 2015.10.22>

②학교기업단장은 대학 교원이나 외부인사 중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2>

③학교기업의 실무를 책임지는 관리장은 관련 해당 학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④총장은 학교기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교수, 일반직원 및 조교 등을 학교기업으로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배속된 자는 대학 신분을 유지 한다.

⑤학교기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지원실을 둔다.<개정 2015.10.22>

제6조(종업원)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임용한다.

제7조(사업내용) ①<삭제 2015.10.22>

②<삭제 2015.10.22>

③<삭제 2015.10.22>

④<삭제 2015.10.22>

⑤도시디자인연구소(해양요트디자인, 건축인테리어디자인, 도시공공디자인 등 전반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현장 실습을 통해 습득)<신설 2015.10.22>

⑥베이스캠프(조리제빵, 바리스타 등 식품가공 및 식음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현장 실습을 통해 습득)<신설 2015.10.22>

제8조(학교기업 관련 협의회) 학교기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의 공동수행
2. 학교기업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학교기업 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학교기업의 촉진 및 학교기업 성과의 홍보

제2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학교기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관리장이 추천한 교내외 인사를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학교기업단장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기업의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2. 학교기업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회의 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학교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자본금 및 예산편성) ① 학교기업은 자본금은 6,000만원으로 하며, 자본금의 자본조달은 당해법인의 학교사업 대표인 총장 책임 하에 조달한다.

- ② 학교기업의 매년 예산편성은 학교기업 대표인 총장 책임 하에 편성한다.

제13조(수입) 다음 각 호를 학교기업의 수입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학교기업계약에 의한 수입금
4. 학교기업 성과에 의한 수익금
5. 학교기업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6. 이자수입
7. 기타 학교기업 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4조(지출) 다음 각 호를 학교기업의 지출로 한다.

1. 학교기업의 관리 . 운영비
2. 학교기업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학교기업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8. 기타 학교기업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5조(회계관리) 학교기업의 회계는 학교기업에 관한 법령이나 학교기업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금

제16조(보상금의 지급) ① 학교기업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을 제한 순 수입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개정 2015.10.22>

③<삭제 2015.10.22>

제5장 보 칙

제1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기업 운영 조직도

